

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맹진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1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11월 1일

발 의 자 : 맹진영, 김진철, 신원철,
우형찬, 송재형, 김기대,
전철수, 최호정, 신건택,
장인홍, 문형주, 유 용 의원
(12명)

1. 제안이유

서울시립대학교는 입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반값 등록금 시행에 이어 2018년부터 입학금과 전형료를 폐지하기로 함. 이에 따라 시립대의 장학금 중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금을 지원해주는 “시민장학금”이 폐지될 예정으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시민장학금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(안 제2조, 제3조,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“시장장학금·복지장학금 및 시민장학금으로”를 “시장장학금·복지장학금으로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의 “수업료(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포함한다)로”를 “수업료로” 한다.

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 (안)
제2조(장학금의 종류) 서울특별시장학금(이하 "장학금"이라 한다)은 <u>시장장학금·복지장학금 및 시민장학금</u> 으로 구분한다.	제2조(장학금의 종류) 서울특별시장학금(이하 "장학금"이라 한다)은 <u>시장장학금·복지장학금</u> 으로 구분한다.	제2조(장학금의 종류) 서울특별시장학금(이하 "장학금"이라 한다)은 <u>시장장학금·복지장학금</u> 으로 구분한다.	제2조(장학금의 종류) 서울특별시장학금(이하 "장학금"이라 한다)은 <u>시장장학금·복지장학금</u> 으로 구분한다.
제3조(지급대상) ① ~ ② (생략)	제3조(지급대상) ① ~ ② (생략)	제3조(지급대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	제3조(지급대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시민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대학교의 신입생 중에서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,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졸업자(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)로 한다.</u>	③ <u>시민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대학교의 신입생 중에서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,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졸업자(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)로 한다.</u>	③ <u>시민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대학교의 신입생 중에서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,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졸업자(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)로 한다.</u>	③ <u>시민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대학교의 신입생 중에서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,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졸업자(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)로 한다.</u>
제5조(장학금의 수혜내용 등) ① <u>시장장학금과 복지장학금은 수업료(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포함한다)로 한다.</u>	제5조(장학금의 수혜내용 등) ① <u>시장장학금과 복지장학금은 수업료(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포함한다)로 한다.</u>	제5조(장학금의 수혜내용 등) ① <u>시장장학금과 복지장학금은 수업료</u> 로 한다.	제5조(장학금의 수혜내용 등) ① <u>시장장학금과 복지장학금은 수업료</u> 로 한다.
② <u>시민장학금은 입학금으로 한다.</u>	② <u>시민장학금은 입학금으로 한다.</u>	② <u>시민장학금은 입학금으로 한다.</u>	② <u>시민장학금은 입학금으로 한다.</u>
③ (생략)	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	③ (현행과 같음)